#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35 발의연월일: 2020. 10. 15.

발 의 자 : 아수진비 · 강은미 · 장철민

송옥주 · 김경협 · 노웅래

윤미향 • 민형배 • 이병훈

어기구 의원(10인)

###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넓히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를 부·처·청 및 위원회로 함(안 제5조제1항).
- 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소방공무원 등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다. 공무원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제3항).

#### 법률 제 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부"를 "행정각부(부·처·청 및 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다른 공무원에"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1. 일반직공무워
-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 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원을 제외한 교 육공무원
- 3. 별정직공무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9조제4항 후단 중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를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를 "제29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 우에는 국회 · 법원 · 헌법재판 소 · 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 -----행정각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말한 도・특별자치도・시・군・구 다)-----(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제6조(가입 범위) ①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 사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1.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 무행정 · 외교정보관리직 공무 무영사직렬 · 외교정보기술직 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원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 <신 설> 3. 별정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u>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u> 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 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
- 3. (생략)
-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 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 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 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③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 <삭 제>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

으로 정하는 사람	
②	

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 무원에-----

-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 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 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 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 는 공무원
  - 3. (현행과 같음) <삭 제>

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 제9조(교섭의 절차) ① ~ ③ (생략)
  -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 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 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 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 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 ⑥ (생 략)
-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 ② <u>공무원에게</u>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교섭의 절차) ① ~ ③ (현
행과 같음)
<b>4</b>
<u>단일화된 때에는</u>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쟁의행위"는 "단체 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 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 다)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에 게"로, 제12조제1항 중 "고용노 동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 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 자"는 "정부교섭대표"로, 제58 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 동관계 조정위원회"로,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동관 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제 6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은 "조정안"으로, 제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공무원 노 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 으로,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로,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 3조"는 "제93조"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 용자"는 제외한다)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 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 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u>"공무원(제6</u>
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을 포함한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 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 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 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 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 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 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 항ㆍ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 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 까지, 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 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 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 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③
<u>제2</u>
9조